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2022-12
----------	---------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2022. 1. 13.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규정 중 법률 근거 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근거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여비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강서구 공무원’의 경우를 준용하던 것을  
‘강서구의회 공무원’으로 준용 주체를 변경(안 제9조)

라.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차구수정 등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협조부서 및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지급한다.(조 개정 2017.3.15.)”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4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임”을 “항공운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지급한다.(조신설 2017.3.15.)”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강서구”를 “강서구의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            ----- <u>필요</u>  <u>한</u> -----            -----.</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략)</p> <p>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로 월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u>지급한다.</u>(조 개정 2017.3.15.)</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수집·연구-----            -----            ----- . ----- <u>1</u>  <u>개월</u> -----            --- <u>지급한다.</u></p>
<p>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67,13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p>	<p>제3조(월정수당) -----            -----            -----            -----            -----            -----</p>

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조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 2018.4.25., 2019.2.2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생략)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  
-----.

--- 1개월 -----

제4조(여비지급) -----

경우-----.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항공운임-----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  
급한다.(조신설 2017.3.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  
의 예에 따른다.

않는다. -----

-----

----- 않은 -----

----- 지

급한다.

제9조(준용) -----

-----

----- 강서구의회 --

-----.

##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